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524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	3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무화 등	14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52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23.

(3) 회 부 일 : 2025. 12.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은 노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운영되는 기관임에도 오히려 환자가 요양기관 내에서 학대나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학대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하여 학대사례가 반복될 구조적 문제가 지속하고 있음. 심지어는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일부 요양병원이 거액의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실정임.

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 발생 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학대행위를 한 기관이 높은 평가등급을 받거나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을 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전문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기관의 책임성과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제3호, 제47조의4제1항·제2항 및 제98조제1항제4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환자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취소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요양기관) ①·② (생 략)	제42조(요양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③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u>

④・⑤ (생략)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
 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가. 환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환자에 대한 성폭력 또는 성희
롱 등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다.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치료 및 간호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
 라. 환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
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
에 사용하는 행위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
 조제1항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행위. 이 경우 “수급자”는 “환
 자”로 본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업무정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제42
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만,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그 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나. 검토의견

□ 최근 정신병원 내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한 학대가 언론에 보도되고¹⁾, 2020년~2024년 발간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 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발생건수가 366건²⁾에 이르는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학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요양기관 내 학대행위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개정안은 학대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로서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안 제98조제1항제4호 신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요양기관 인정³⁾ 취소(안 제42조제3항제3호

1) 경북일보, “경찰, ‘정신병원 환자 학대’ 수사 착수, 2023.10.5.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821>

머니투데이, “환자 몸 올라타고 폭행한 요양보호사…정신병원 CCTV 속 학대 ‘충격’“, 2025.1.10.

<https://www.mt.co.kr/society/2025/01/10/2025011010223680263>

KBS뉴스, “창틀에 묶고 바닥에 배변”…인권위, 모 정신병원 수사 의뢰, 2025.2.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0485&ref=A>

2)

< 병원 내 노인학대 발생건수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병원 내 학대발생 건수	37	62	86	115	66	366
요양병원	27	59	78	107	61	332
일반병원	10	3	8	8	5	34

2020~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 재구성

3) 현행법 제42조는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절차 및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요양기관 인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시설)를 하도록 하여 요양기관 내 학대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⁴⁾은 학대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학대행위의 각 유형은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⁵⁾으로 하는바, 학대행위의 방지 필요성과는 별개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규정한 현행법 제98조제1항 각 호6)를 살펴보면 업무정지 사유는 ① 속임수 등으로 보험자·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 등으로 행위·치료재료를 실시·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

- 참고로, 감사원은 지난 2025년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한 제재 근거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요양병원에 대하여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관리 의무와 노인학대 발생 시 수사기관 등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7)8)에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6)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7)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9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단계에서 운영기준을 위임한 「의료법」 제36조제3호⁹⁾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그와 같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개정이 중지된 상태이고, 2026년 1월 현재 향후 추진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조치사항으로 통보받았다는 점,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입법 추진 등 추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④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⑥ 삭제
- ⑦ 요양병원 개설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진료 등을 위하여 소속 의료인 및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한다.
- 8)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신고의무 등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의무 위반 시 「의료법」 제36조제3호를 위반한 것인데, 이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64조는 그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신고의무 등이 추가되는 「의료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 9)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둘째, 전문요양기관 인정 취소 사유 추가와 관련하여, ‘전문요양기관’은 해당 제도가 마련된 이래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전문요양기관’의 근거 규정이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마련되었는데, ‘종합전문요양기관’ 제도는 「의료법」 상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로 개편(’09년 개정, ’10년 시행)¹⁰⁾된 반면, ‘전문요양기관’의 근거 규정은 그대로 두고 「의료법」에 별도로 ‘전문병원’ 제도가 신설(’09년 개정, ’10년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현재 의료전달체계¹¹⁾ 하에서 전문요양기관을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기능이 중첩될 수 있어 전문요양기관 인정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00년대 초반 전문병원 제도 도입 방안 검토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전문요양기관 규정을 활용하

10)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후 비교 >

[시행 2008.3.28.] [법률 제9022호, 2008.3.28., 일부개정] 제40조(요양기관)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u>	[시행 2010.1.31.] [법률 제9386호, 2009.1.30., 타법개정] 제40조(요양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u>
의료법([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u>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09. 1. 30.] (부칙)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u>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u>	

11)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병원-의원

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의료법」에 별도로 전문병원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였고¹²⁾, 그 결과 1999년 전문요양기관 제도를 마련한 이후 2009년 「의료법」에 전문병원 규정을 마련하기 이전까지도 전문요양기관 인정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임.

□ 셋째,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개정안은 그 적용대상을 ‘요양기관’¹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외에 약국,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 등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제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익이 크지 않다면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업무정지를 규정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또는 위반사실 공표의 근거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2)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전문요양기관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환자 구성비율, 인력, 시설 등 지정기준을 재검토하여 「의료법」에 별도로 전문병원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임.

1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현행법 제99조¹⁴⁾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¹⁵⁾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두 조문 모두 그 사유를 부당하게 보험자나 가입자 등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학대행위에 따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자 하거나, 학대행위 위반 요양기관을 공표하고자 한다면 관련 조문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자구를 살펴보면 “환자”라는 용어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표현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안 제42조제3항제3호마목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인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14)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입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속입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입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 15)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형법」 등 관계 법령에 이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학대 행위 등에 대해 사법·행정적 제재 근거가 마련¹⁶⁾돼 있어 이중 규제의 소지가 존재함.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것은 보험급여 실시를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 및 규율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음.

16) 보건복지부는 「형법」에 따라 상해, 폭행, 학대 등으로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점,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는 설명임. 다만, 「형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있더라도 벌금형인 경우에는 의료인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을 것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의2.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제61조의2(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지복무요원은 제외한다.

□ 대한요양병원협회

-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요양기관 내 폭행·학대 행위는 이미 「의료법」, 「노인복지법」, 「형법」 등에 따라 엄격한 사법적·행정적 제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바,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기존 체계와 별도로 업무정지 명령까지 부과하는 것은, 동일 사안에 대한 제재가 중첩되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기관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평가될 수 있고, 기관에 대한 제재는 반복적·구조적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아울러,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행위의 상당 부분이 요양기관의 직접 고용 인력이 아닌 사적 간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 전체에 귀속하고 있어, 사적 간병인의 행위까지 사실상 요양기관의 책임에 포함하는 결과를 초래함. 더불어, 처분 기준과 면책 조항 요건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증대할 우려가 큼.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 노인 환자 보호와 학대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 영역을 중심으로 한 노인 환자 학대문제 영역을 넘어 의료기관 전반에 과도하게 적용

되는 점, 의료기관 개설자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와 행정처분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포괄적 규정은 선의의 의료기관까지 위축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진료 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임.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무화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평가 시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 ----- ----- ----- <u>실시하여야 한다.</u>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u>평가할</u>	② ----- ----- ----- <u>평가하</u>

수 있다. ③·④ (생략)	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는 현행법 제47조의4¹⁷⁾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안전성, 효과성, 효율성, 환자중심성 등¹⁸⁾의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임.

- 동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요양기

- 17)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① 법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라 한다)는 의료의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원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및 질병·부상별로 구분하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적정성평가를 위하여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평가원은 매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8)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의 적정성”이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급여가 효과성·효율성·환자안전·환자중심성·연계성·형평성 등의 영역에서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말한다. 위 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효과성: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나. 효율성: 사용한 자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낭비를 줄이는 것
 - 다. 환자안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
 - 라. 환자중심성: 환자의 관점에서 필요, 가치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마. 연계성: 적절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의사 및 의료서비스 유형을 상호 조정·연계하는 것
 - 바. 형평성: 성,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수준 등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질적으로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관의 인력·시설·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¹⁹⁾할 수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는 만성질환, 약제, 심뇌혈관 질환, 암질환 등 3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26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36개) >

영역 (36)		항목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만성질환 (7)	①고혈압·당뇨병, ②천식, ③만성폐쇄성폐질환, ④결핵, ⑤혈액투석, ⑥류마티스관절염, ⑦슬관절치환술
	약제 (3)	⑧~⑩약제 급여(항생제, 주사제,약품목수)
급성기 치료	심뇌혈관 질환 (4)	⑪관상동맥우회술, ⑫급성기뇌졸중, ⑬~⑭허혈성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암질환 (5)	⑮대장암, ⑯폐암, ⑰위암, ⑱유방암, ⑲간암
	입원의 질 (3)	⑳병원표준화사망비, ㉑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㉒입원일수
	기타 (9)	㉓수혈, ㉔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18개 수술), ㉕마취, ㉖폐렴, ㉗중환자실, ㉘신생아중환자실, ㉙환자경험, ㉚중소병원, ㉛영상검사
정신건강	(4)	㉜의료급여 정신과, ㉝정신건강 입원영역, ㉞우울증 외래, ㉟치매
장기요양	(1)	㊱요양병원 입원급여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

19)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⑥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합시키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 내 학대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 범위(대상)를 정하여²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
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하
여, 평가항목별로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모든 평가의 평가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중

20)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6조(평가대상의 선정)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의료자원 배분의 왜곡 등으로 인하여 요양급여의 비용효과가 낮은 경우
3.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만으로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보 및 개선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빈도나 비용의 비중
2. 의·약학적 중요성
3. 사회적 관심의 정도
4. 평가실시로 기대되는 개선효과
5. 평가의 용이성

③ 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평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및 중복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
3항에 따라 제15조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매년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대상, 평가목적 및 필요성, 평가 대상기간,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2025년 적정성 평가항목

구분(총 36항목)		평가항목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9)	만성질환 (6)	①고혈압·당뇨병, ②천식, ③만성폐쇄성폐질환, ④결핵, ⑤혈액투석, ⑥류마티스관절염
	약제(3)	⑦~⑨약제 급여(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하나인 ‘고혈압·당뇨병’의 경우 외래환자에 대하여 약제 처방 위주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고, 현재도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²¹⁾).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가항목의 목적에 따라 평가대상 요양기관 대상이 다르고, 평가항목(질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를 달리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적정성평가 실시와 인력·시설·장비·환자안전 등 평가사항을 의무로 규정할 경우 평가항목(질환) 특성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과도한 행정부담의 우려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평가 항목에 인력·시설·장비·환자안전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부분은 의료기관 종별이나 기능, 진료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일률적인 행정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됨. 이는 노인 및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중심으로 제시된

21) 참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별 평가지표 현황

입법 취지와 비교할 때,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

참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별 평가지표 현황

평가 항목		평가지표			
		인력	시설, 장비	환자안전	그 외 (치료효과, 비용 등)
1	고혈압·당뇨병			●	●
2	천식			●	●
3	만성폐쇄성폐질환			●	●
4	혈액투석	●	●		●
5	류마티스관절염			●	●
6	약제급여(항생제)			●	
7	약제급여(주사제)			●	
8	약제급여(약품목수)			●	●
9	관상동맥우회술			●	●
10	급성기뇌졸중	●		●	●
11	대장암	●		●	●
12	위암	●		●	●
13	폐암	●		●	●
14	간암	●		●	●
15	유방암	●		●	●
16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	
17	수혈			●	
18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19	마취	●	●	●	
20	폐렴			●	●
21	중환자실	●	●	●	●
22	신생아중환자실	●	●	●	●
23	중소병원	●	●	●	
24	영상검사	●	●	●	●
25	의료급여 정신과			●	●
26	정신건강 입원영역			●	●
27	요양병원	●		●	●
28	결핵				●
29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30	급성심근경색증				●
31	병원표준화사망비				●
32	입원일수				●
33	환자경험				●
34	우울증 외래				●
35	치매				●
36	슬관절치환술(예정)				

자료 : 보건복지부